

공 사 계 약 일 반 조 건

목차

제1 조총칙	제 25 조 지체상금
제2 조정의	제 26 조 계약기간의 연장
제3 조계약문서	제 27 조 검사
제4 조사용언어	제 28 조 인수
제5 조통지 등	제 29 조 기성부분의 인수
제6 조채권양도	제 30 조 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제7 조계약보증금	제 31 조 일반적 손해
제8 조계약보증금의 처리	제 32 조 불가항력
제9 조연대보증인등의 자격	제 33 조 하자보수
제 10 조손해보험	제 34 조 하자보수보증금
제 11 조공사용지의 확보	제 35 조 하자검사
제 12 조공사자재의 검사	제 36 조 특별책임
제 13 조지급자재 및 대여품	제 37 조 특허권의 사용
제 14 조공사현장 대리인	제 38 조 발굴물의 처리
제 15 조공사현장 근로자	제 39 조 기성대가의 지급
제 16 조공사감독관	제 39 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제 17 조착공 및 공정보고	제 40 조준공대가의 지급
제 18 조휴일 및 야간작업	제 41 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이자
제 19 조설계변경 등	제 42 조하도급의 승인
제 19 조의2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 43 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제 19 조의3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 44 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 19 조의4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제 45 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해지
제 19 조의5 전주대학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제 46 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 19 조의6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제 47 조공사의 일시정지
제 19 조의7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제 47 조의2 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제 20 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 48 조공사계약의 보증이행
제 21 조대형공사의 설계변경 등	제 49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 22 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 50 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제 23 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 51 조분쟁의 해결
제 24 조 응급조치	제 52 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제 53 조현장설명조건 이행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 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 라 함은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이사장 또는 전주대학교 총장(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경우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 라 함은 계약담당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 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주대학교(또는 산학협력단 계약의 경우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4. “설계서” 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 이하 같다)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5. “공종별 목적물을 물량내역서” 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입찰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 라 한다)를 말한다.
6. “산출내역서” 라 함은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 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7.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 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 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사항과 관련하여 당해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 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 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 서 벌급기관(이하 “보증기관” 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약담당자가 인정할 경우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다.
- ②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귀속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기성금 등 미 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체없이 반환한다.
- ④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연대보증인등의 자격)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보험)

-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시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당해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 부분의 순 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제출 시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당해 공사 착공 시부터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 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승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등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 ①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는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을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리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자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자체할 수 없다.
-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리자 및 공사감독관의 참여 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리자 및 공사감독관의 참여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13조(지급자재 및 대여품)

- ①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는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자재 등(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지급자재 등은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있으며, 임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후의 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멀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변상하여야 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리자 및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자체되어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자기보유의 자재 등을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대체 사용한 자재 등을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⑦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⑧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리자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계약담당자는 공사현장대리인이 공사의 수행능력상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제외한 시공전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며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
-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공사감리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품질관리자)
 - 2. 공사공정예정표
 -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5. 착공 전 현장사진
 - 6.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 월별 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 ⑤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도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설계변경 등)

-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 전에 지체없이 공사감리자 및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4. 기타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한다.
 -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 2.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리자 및 공사감독관을 경유

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공사감리자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즉시 시행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한다.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한다.
- ③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자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리자 및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리자 및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 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심의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자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리자 및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5(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 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공사감리자 및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 ① 계약담당자는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통보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 ④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되는 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 ① 계약담당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 2, 제19조의 3 및 제19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감리자 및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 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포함 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가 확정 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액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등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운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안전관리비율 등의 승율 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운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 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⑥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⑦ 계약담당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자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부터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대형공사의 설계변경 등)

- ①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③ 제1항에 정한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외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가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률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률에 의한 경우
 6. 지장률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증가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 ⑤ 제3항의 각 호의 1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세부공종(단일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동시에 발생되는 관련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동 공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감액되는 금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동시에 발생되는 때에는 세부 공종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세부공종 단위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제22조(불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불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하지 않는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하지 않는다.

제24조(응급조치)

-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리자 및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 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자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6.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④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이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이후에 제27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의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 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 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리자 및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검사)

-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자급자재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 이상 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 ⑧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인수)

- ① 계약담당자는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 × 15") 각 5매 및 필름
 -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잎(VHS) 5본
 -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9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
-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1. 공사명
 - 2. 착공 및 준공 년월일
 - 3. 공사금액
 - 4. 계약상대자
 -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 6. 하자발생 시 신고처
 - 7. 기타 필요한 사항
- ⑤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 ② 제2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 ①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는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의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 ③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 ③ 계약당사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안전관리에 소홀한 모든 피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3조(하자보수)

-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현금 또는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건설공조제합보증서
 2. 보증보험증권
-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귀속한다.
- ③ 계약담당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 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계없이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정한다.

제35조(하자검사)

- ① 계약담당자는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 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특허권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유권으로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

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공사감리자 및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할 수 있다.
- ②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계약담당자는 제27조 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 대가에 상당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20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된 단가에 의한다.
- ⑥ 제40조 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 ①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 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이자)

-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대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 제2항 단서 및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서면 승인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종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

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 대기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0이상)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판단되는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자체 없이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 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 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금 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가 지급 후 잔액이 있을 때에도 이와 상계 할 수 있다.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는 제44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② 제44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③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 제3항 각 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 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 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 되었을 때

2.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45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자체 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 ① 계약상대자는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가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규정한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48조(공사계약의 보증이행)

-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44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자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 ④ 계약담당자는 연대보증인이 제1항의 청구를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제재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① 계약상대자(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는 국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면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입찰참가에도 그 제한을 받게 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도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입찰참가에도 그 제한을 받게 된다.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업수 의무)

- ①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

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51조(분쟁의 해결)

-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2.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현장설명조건 이행) 계약상대자는 전주대학교에서 요구한 현장설명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끝.

공사계약특수조건

목 차	
제 1 조	총 칙
제 2 조	우선적용
제 3 조	계약보증금의 납부
제 4 조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제 5 조	연대보증인
제 6 조	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제 7 조	기성대가의 지급
제 8 조	준공금 지급
제 9 조	안전관리
제 10 조	품질관리 등
제 11 조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제 12 조	공사감리자와의 관계
제 13 조	감리자 및 감독관 경유 서류 등
제 14 조	노임지급
제 15 조	공동도급계약의 의무와 책임
제 16 조	공사감독관의 지시
제 17 조	설계변경 전 공사 이행 금지
제 18 조	공사관리 확인
제 19 조	법령준수
제 20 조	통지 등
제 21 조	기타사항
제 22 조	도면 등 설계서의 검토에 따른 이의 제기

제1조(총 칙) 이 조건은 전주대학교 총장(산학협력단의 경우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과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본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우선적용)

- ① 이 조건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적용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당해 조건과 일반조건과의 상치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조건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보증금의 납부)

- ① 계약일반조건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서로 납부 할 때에는 보증서의 피보험자를 전주대학교 총장(산학협력단의 경우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60일 이상 연장 보증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시 기성 등 미지급금이 있을 경우 계약보증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 ①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는 계약체결 후 또는 이행 완료 후 설계금액 및 예정금액을 구성하는 물량의 산정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금액 중 이에 상당한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할 수 있다.
- ② 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계약 및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동 증빙자료의 위치, 변조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자료의 제출이 발견될 때에는 전주대학교는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종결 후에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기성대가 중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금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전주대학교에서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제기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5조(연대보증인)

- ①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연대보증인은 이 조건에서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승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타인이 시공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전자공사 시공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의 책임을 진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성격 등을 감안하여 계약을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면책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의 권리를 상실한다.
- ④ 연대보증인은 원 계약자의 부도 또는 폐업의 경우 원 계약자를 대신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 ⑤ 설계변경 등에 의한 공사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전주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직접 변경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6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등 일반조건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과 계약보증기간을 연장 조치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증액으로 인한 추가수입인지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기성대가의 지급)

- ① 기성대가의 지급은 1회(준공금 포함)로 지급한다. 단, 선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는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지급을 요청하였을 경우 검사완료일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 기성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준공금지급)

- ① 준공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9조(안전관리)

-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표시판을 제작하여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안전표지판에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서상의 안전관리비를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만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소요된 안전관리비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작성된 지출내역을 기성청구 및 준공금 청구 시 증빙서류와 함께 감리자 및 현장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서 안전관리비를 소요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전주대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반환 조치시킬 수 있다.
- ⑥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공할 경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명기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전주대학교가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⑧ 계약상대자는 시공상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에 소홀해서는 아니되며, 안전소홀에 대한 책임을 면책받지 못한다.

제10조(품질관리 등)

-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 등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필요에 의한 품질 관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반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설비구축 후 시제품이 생산될 때까지 소속 직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제11조(공사안내표지판 설치) 계약상대자는 학내 구성원의 이해를 둘고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감도 등 공사현황(안내)판을 현장 주변에 일반인의 통행이 찾고 쉽게 눈에 띄는 장소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감리자와의 관계) 계약상대자는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위임을 받아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13조(감리자 및 감독관 경유 서류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반조건의 규정 및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대학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공사 감리자 및 감독관의 확인 및 경유를 받아야 한다.

제14조(노임지급) 전주대학교는 공사의 원활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순응하지 않을 경우 당해 공사 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노무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제15조(공동도급계약의 의무와 책임)

- ① 계약상대자 및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도급표준협정서(이하 “협정서”라 한다)는 계약문서로 본다.
- ② 협정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모두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계약체결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등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주대학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③ 기성금 등 대가를 신청할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청구내역을 별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의한 기성부분 대가 신청 시 공사의 성격상 전주대학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구성원이 실제 시공한 부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금 신청 시까지는 당초 합의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맞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구성원이 있을 경우에는 자진 탈퇴와 포기각서 제출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여 공동수급 의무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준공기한 내에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전주대학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는 제5항의 통보를 받을 경우 대표자에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운영위원회를 열어 당해 구성원의 탈퇴 및 구성원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의 필요한 조치중 구성원의 변경에 있어서는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공사감독관의 지시)

-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음)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공사 일부분의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이 설계변경 등에 대한 서면 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설계변경 전 공사 이행 금지)

-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한 공사의 변경시공 등에 있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상관없이 전주대학교와 합의서 등에 의한 변경 계약을 확정하기 전까지 일체의 시공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전주대학교와 합의서 등에 의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루어진 시공 상의 행위는 감독의 지시나 서면성의 작업 지시 등에 의한 시공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않으며 이에 대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제18조(공사관리 확인)

- ①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 1. 시공 상태
 - 2. 안전관리상태
 -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 4. 공사현장 관리상태
 -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6. 기타 계약조건 이행 사항
- ②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는 제1항에 의한 조사 점검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고 및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제19조(법령준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되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에는 자체 없이 전주대학교에 서면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통지 등)

- ① 당해 계약에서 문서처리나 통보는 우송 및 전송에 의한 문서, 전화 및 구두로 수행할 수 있다.
- ②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또는 공사감독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는 증명, 승인 및 통보는 문서 수발 절차에 따른 서면에 의하여 조치된 것만이 유효하다. 따라서 전화나 구두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3일 이내 정식 문서로서 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가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또는 공사감독관에게 발행하는 승인요청, 보고, 통보는 문서수발 절차에 따른 서면에 의하여 조치된 것만이 유효하다. 따라서 전화나 구두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3일 이내 정식 문서로서 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사항)

-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산출내역서 및 현장설명 사항 등에 정하여져 있지 않은 공사계약사항에 대하여는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종재기관의 종재에 의한다.
- ③ 제2항의 종재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전주대학교(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 ④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차액보증금을 포함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계약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22조(도면 등 설계서의 검토에 따른 이의제기)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설명 시 배부, 열람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누락되거나 잘못 표기된 사항이 있을지라도 본 공사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이므로 공사 공정 및 공종상 당연히 계약상대자가 책임시공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